


<h1>보도자료</h1> <p>2021. 8. 17.</p>		<h2>양형위원회</h2>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송영복 (☎ 02-3480-1924)</p>

양형위원회 8/17(화) 제111차 회의 결과: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결정

- 각 범죄군 양형기준별로 개별적으로 설정된 『합의 관련 양형요소』(처벌불원, 상당 금액 공탁 등)의 통일적·체계적 기준 정립을 위한 정비 원칙 의결: 보호법익(개인적 법익, 국가·사회적 법익)을 기준으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차등 반영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관한 통일적인 정의 규정 마련
- 의결된 정비 원칙에 따라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10/1(금)]에서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예정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1. 8. 17. 16:00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 11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원칙, 정의 규정을 의결함

1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원칙

○ 의결사항

-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정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개인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국가·사회	-	-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상세 설명

-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의 달성, 비교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따라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고, 범죄군 특성에 따라 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이를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② 그렇지 않은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각 반영. 한편,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벌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로도 반영하지 않음
-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가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각 범죄군의 특성에 따라 ①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합의 관련 양**

형요소를 규정하거나, ②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을 일반감정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

- 특정 범죄군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후 그에 따라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

②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의 규정

○ 처벌불원

- 정의 규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① 가해자 태도 요소로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고, ② 피해자 의사 요소로서 양형심리를 통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을 요구함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정의 규정에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은 따로 반영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상이

-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자칫 피고인의 경제력이 양형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비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처벌불원의 요건으로 둘 만한 논리적 정합성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자체가 「회복적 사법」의 핵심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정의 규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종전 양형인자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통합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 핵심 요소로서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②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 또는 그 확실시를 정하되, 종전 재산범죄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삼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은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임
- 정의 규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뇌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다음 이유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
 - 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②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이와 같은 기

준을 다양한 범죄에 걸쳐 일관되게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설령 정의 규정을 두더라도, 추상적인 기준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 해당 인자의 판단 기준은 결국 사회통념상 피해 회복의 「상당성」이므로, 불완전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향후 일정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관련

- 2021. 10. 1.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2021. 10.~ 2021. 11.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조회
- 2021. 12. 위 의견 조회에 따라 접수된 의견 검토하여, 합의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한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

- 일시: 2021. 10. 1.(금) 오후
- 장소 및 방식: 대법원 회의실 대면 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안건: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